

# 아내학대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아내학대에 대한 잘못된 믿음(Myth)에 관한 연구\*

- 경찰, 변호인, 의료인을 중심으로 -

Wife Abuse and Opinions of Police, Lawyers, and Doctors :  
Some Realities about the Myths\*

대구가톨릭대학교 생활환경학과  
시간강사 손정영

Living Environmental Studies, Catholic Univ. of Daegu

Instructor : Sohn, Jeong Young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yth(erroneous beliefs) of police, lawyers, and doctors about wife abuse. Subjects included 194 police, 81 lawyers, 164 doctors, and 222 public who lived in Taegu and kyungbuk.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follows: first, subject-groups commonly have the myth about wife abuse. Second, there are no differences by sex, formal education, and marital status. Additionally significant age differences are found in police and lawyers. Third, especially they have the myth about wife abuse-e.g. battered women could avoid being battered by simply leaving their batterers, their husbands can stop the abuse by attending a counseling or therapy session and by decreasing the job-stress, and they must not to divorce for their children.

**주제어(Key Words):** 아내학대(wife-abuse), 잘못된 믿음(myth)

Corresponding Author: Sohn Jeong Young, Living Environmental Studie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330 Kumlak-ri, Hayang-up, Kyeongsan-si, Gyeongbuk, 706-763, Korea Tel : 82-53-850-3511 Fax : 82-53-850-3504 E-mail: sohn-oh@hanmail.net

\* 이 논문은 2000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0-DA0043)

## I. 서론

### 1. 문제제기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 5436호)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5487호)이 제정된지 5년이 되었다. 그동안 '폭력남편에 두달간 안방출입 금지명령', '가정폭력 피해주부 남편 퇴거명령 신청(조선일보, 1998, 1999)' 등의 제목으로, 법의 가시적 효과를 보여주는 기사들이 심심지 않게 등장하였다. 또한 통계적인 수치로 볼 때 1998년 초 257건에 그쳤던 가정보호사건이 2000년 상반기에만 3877건으로 14배 이상 증가하는 법률제정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조선일보, 2000).

그러나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부작용과 혼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이 바로 가정폭력 관련사건의 법적인 처리 과정 및 결과 측면이다.

가정폭력으로 고소 당한 3명 중 2명이 법원의 아무런 처분 없이 가정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조선일보, 1999), 아예 신고 접수 후 경찰이 출동조차 하지 않거나 사건처리과정에서 가해자의 입장을 옹호한다거나 또는 사건접수 후 피해자에게 결과처리에 대한 통보를 아예 하지 않는 등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이 '숨방망이'에 그치는 사건들이 언론 매체를 통해 간간히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관련법이 제정, 발효된 현시점에서도 아직까지 행정일선에서 나타나는 가정폭력에 대한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처리관행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되는 것이 바로 아내학대 관련기관의 종사자들이 가지는 아내학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문제이다(여성신문, 2002; Gelles와 Cornell, 1985; Ewing와 Aubrey, 1987; Koski와 Mongold, 1988; Walker, 1979).

Walker(1979)는 아내학대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21가지의 'Myth', 즉 '잘못된 믿음'으로 정리하였는데, 실제로 그의 이러한 견해는 New Jersey의 최고 법원에서의 아내학대사건 심리과정에서 아내학대에 대한 배심원들의 이해를 돕는 중요한 증거로 채택된 바 있다(Ewing & Aubrey, 1987). 그러나 일반인이 아내학대에 대해 이처럼 왜곡되고 잘못된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경험적 연구에 의해 입증된 바 있으나(Ewing와 Aubrey, 1987) 관련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다.

일반인의 잘못된 믿음(Myth)도 또한 문제이지만 가정폭력 관련 특례법에 근거하여 아내학대 사건을 가장 일선에서 처리하는 사법경찰과 가해자의 폭력행위의 재발 여부에 있어 직접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조인과 의료인의 아내학대에 대한 잘못된 믿음(Myth)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보다 큰 심각성과 중요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타인과 타인의 관계에서는 폭력이 일어나는 그 순간 자동적으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비해서 아내학대의 경우는 왜 자동적으로 법적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도 우리 사회에 만연된 '잘못된 믿음(Myth)의 보편성'을 이해함으로써 해결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Myth)은 아내학대 발생원인에 대한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인식과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사후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아내학대와 관련된 효율적이고도 전문적인 실천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는 '경찰이 폭력사건을 가해자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극심한 공포와 상처를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폭력사건 처리불만신고센터 관계자의 언급과 '가정폭력방지법이 법률적인 실효성을 거두려면 경찰들의 인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가정폭력 상담원의 지적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여성신문, 2002).

따라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선에서 아내학대 문제를 관련법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하는 아내학대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아내학대사건과 피해자, 가해자의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본 연구를 통해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아내학대에 대한 잘못된 믿음(Myth)의 정도가 일반인들의 잘못된 믿음(Myth)에 비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법적용의 실천성과 효율성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는 일반인들과의 비교를 통해 아내학대 관련기관 종사자인 경찰관, 의사, 법조인들의 아내학대에 관한 잘못된 믿음(Myth)의 정도를 파악하여 이들의 법실행상의 준비도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 효율성과 실천성을 높이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잘못된 믿음(Myth)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보편성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연구대상의 성별, 연령, 결혼유무, 직업, 지역에 따라 잘못된 믿음(Myth)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내학대 관련기관 종사자들과 일반인의 아내학대에 대한 잘못된 믿음(Myth)의 정도는 어떠하며 이들 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내학대 관련기관 종사자들과 일반인의 아내학대에 대한 잘못된 믿음(Myth)은 성별, 연령, 결혼여부,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아내학대 관련기관 종사자들과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아내학대에 대한 잘못된 믿음(Myth)은 어떤 것인가?

## II. 이론적 배경

### 1. 아내학대 관련기관의 문제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7월 1일 관련법이 발효되었지만 아내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동적인 반응과 문제의 본질을 무시하는 풍조가 남아 있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현실을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즉 현재의 아내학대 발생률과 미래의 발생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Buris와 Jaffe(1983, 1984: 재인용)는 다음 4가지 측면의 주요 변화가 제반 사회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아내학대사건을 형사 처벌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적 변화, 둘째 피해자 인권보호 서비스의 제공, 셋째 가해자를 위한 원조 서비스, 넷째 대중 및 관련기관의 인식 증가와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전문적 교육증가가 그것이다.

이를 면밀히 살펴보면, 아내학대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만이 4가지 항목의 긍정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즉 첫째 아내학대사건을 형사 처벌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적 변화의 문제는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법조계와 경찰의 의식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둘째 피해자 인권보호 서비스의 제공의 문제와 셋째 가해자를 위한 원조 서비스문제 또한 경찰과 법조인은 물론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한다. 그리고 대중 및 관련기관의 인식 증가와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전문적 교육증가의 문제는 본 연구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항목으로써, 우리나라는 물론 법제정이 훨씬 이전에 이루어진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 실정이어서 일반대중은 물론 일선 경찰에 대한 전문적 교육이 부족한 점이 연구자들에 의해 또한 지적되고 있다(이동원·김지선, 1998; Roy, 1977).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내학대 관련기관으로는 상담소와 보호시설, 경찰, 법원, 그리고 의료기관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상담소와 보호시설 종사자들은 아내학대에

대한 잘못된 믿음(Myth)이 가장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증거로 McKeel과 Sporakowski (1993)의 연구에서 연구대상인 상담자 119명(여성 106명, 남성 13명) 중 109명이 아내학대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답하였고 나머지 10명은 부부 모두에게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리고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Koski와 Mangold, 1988)에서도 경찰이나 법원의 위기개입센터 보다는 상담자와 상담자가 가정폭력해결에 보다 효과적인 방법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어 이 분야 종사자들이 아내학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개입태도를 가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경찰은 위기상황에 부딪혔을 때 24시간 내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공공기관이며(Martin, 1992), "가정불화에 있어서 사회통제의 전면에 있는 대리인으로서 국가의 정책을 가까이에서 대표하는 사람"(Berk와 Loseke, 1980)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내학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의 의무로는 임시조치로써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피해자의 상담소, 보호시설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인도, 재발 시 격리나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신청(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1998)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과 의무 및 일반인들의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또한 경찰이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같은 남성으로서 피해 당사자인 여성보다도 가해자인 남자에게 더 호의적이며, 매맞는 아내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과 비참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특성을 보이는데 이에 사회에 만연된 아내학대에 대한 잘못된 믿음(Myth)이 더해지면서 그 역할과 의무의 수행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Koski와 Mangold(1988)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 성인남녀 모두 가정폭력의 해결에 있어 경찰이 가장 비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응답(남성응답자의 57.3%, 여성응답자의 39.8%)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1976년 미국 뉴욕시의 여성들이 아내학대에 대한 선택적인 무관심을 이유로 뉴욕경찰관, 보호관찰관, 그리고 가정법원관계자들을 상대

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남편의 구타로 불구가 된 Tracy Thurman이라는 여성은 1984년 도링턴시와 29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예가 있다.

이상의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회문제로서의 아내학대에 대한 경찰의 역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경찰기관의 행동과 태도이다. 경찰이 아내학대와 같은 문제를 다루기 꺼린다는 사실은 Michigan 주의 경찰훈련소에서 배부되는 가정소요 처리절차에 관한 방침에 의해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데 그 방침의 내용은 '1. 가능한 한 체포를 피할 것, 2. 영장 신청절차가 복잡함을 신고인에게 설명할 것, 3. 경찰의 관심은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것을 막는데 있음을 알려줄 것, 4. 범정이 휴회 중이거나 판사가 부재 중이라는 구실을 대어서 고소를 늦출 것, 5. 가정소요에 불과하므로 너무 저친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Martin, 1992).

지금까지 아내학대에 대한 경찰의 잘못된 믿음(Myth)에 대해 다수의 학자들이 문제제기를 하였고(Gelles와 Cornell, 1985; Roy, 1977; Berk와 Loseke, 1980), 몇 가지 사례를 그들의 저서에 소개하기는 했지만(Martin, 1992) 대표성 있는 표본의 경찰집단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인 실태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범조인의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법에서 아내학대와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는 법적 조치로, 검사는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 처분, 형사처벌을 위한 기소, 법원 송치를 할 수 있고, 법원은 임시조치로써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접근금지, 의료기관 및 기타 요양소에 위탁,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보호처분으로써 접근행위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이 있다.

그런데 Acker와 Toch(1985)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범조인들이 일반인들 보다 아내학대에 대한 편견이 심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그의 견해를 지지해 주는 다음과 같은 증거가 있다. 1974년 미국의 한 여성이 그 지역의 지방검사를 상대로 자

신을 확대하는 남편을 끝까지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그 검사가 매맞는 여성에 대한 동등한 법의 보호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Gelles, 1998; 재인용). 또한 확대받는 여성의 심리적 특성과 일반인의 잘못된 믿음(Myth)에 대한 Walker의 증언을 법적 증거로 채택했던 Kelly 법정은 아내학대사건 발생원인과 피해여성의 심리적, 행위적 특성은 '일반인의 지식범위 밖'에 있다는 특수성을 인정한 바 있는데(Ewing와 'Aubrey, 1987), 이 사건 후 확대하는 남편을 살해한 여성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심리전문가의 증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Ewing, 1987).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이 제정된 지 5년이라는 짧은 기간이 흐른 이유로 법기관이나 집행자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이나 문제제기의 움직임이 표면화되고 있진 않지만 지금까지의 법적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반발의 가능성은 크게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즉 관련법이 처음 발효되었던 1998년 통계에 따르면 그 해 접수된 가정보호사건 643건 중 상해와 폭행사건이 전체의 98.9%(이 중 배우자 관계인 경우가 88%)로써 이 중 가해자에 대해 접근행위제한 52건, 사회봉사 수감명령 45건, 보호관찰처분 56건으로 총 153건만이 처리되어(대법원, 2000) 나머지 500여건에 대한 미온적 처리가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그 다음 해인 1999년 3월부터 4월에 접수된 151건의 가정보호사건(이 중 피해자가 배우자인 경우가 131건)을 분석한 결과, 법원의 처분 중 가해자를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되돌려 보내는 불처분 결정이 151건 중 99건 (65.6%)<sup>1)</sup>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따라서 가정폭력으로 고소당한 3명 가운데 2명이 아무런 법원의 처분 없이 가정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조선일보, 1999).

가해 남성을 전과자로 만든다는 사회적 비난과 자신의 죄의식으로 인해 고소, 고발을 망설이는 피해 여성들의 심리적 위축감을 덜어 주고, 남성을 형사처벌하지 않으면서도 폭력을 중단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Weiss, Tolman & Bennett, 1998)

접근행위제한, 사회봉사·수감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처분과 같은 보호처분의 비중을 보다 늘려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다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의료기관의 종사자들은 학대사건에 대한 신고의무가 부여되며(법률 5436호 4조 2항), 사법경찰에 의해 인도된 피해자들을 접하거나(법률 5436호 제5조 3항), 피해자 본인, 가해자, 가족, 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치료보호 조항에 의거 환자를 접하게 된다(법률 5487호 제18조 1항).

의료인들은 주로 보건상담이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환자에 대해 비호의적 반응이나 왜곡된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피해 당사자의 심리적 피해를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무관심으로 대함으로써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피해 여성들의 의지를 감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처럼 상담소, 경찰, 법원, 병원의 공조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는 물론 사회복지사의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 2. 아내학대에 대한 잘못된 믿음(Myth)

아내학대에 대한 잘못된 믿음(Myth)이란 학대를 당한 피해 여성들이 보이는 비정상적인 일련의 심리, 행위 특성을 통해 주위 사람들이 아내학대의 원인과 과정에 대해 인식하게 되는 왜곡된 사실, 또는 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Walker(1979, 1984)는 '남편으로부터 학대 당하는 여성은 많지 않다'거나, 학대 당하는 여성은 피학대 음란증 환자'라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21가지 잘못된 믿음(Myth)을 제시한 바 있다(표 3참고).

- 1) 그 외는 사회봉사 수감명령이 22건, 접근금지 21건, 상담위탁 6건, 보호관찰 3건 순이며, 치료감호처분은 한 건도 없음(조선일보, 1999).
- 2) 우리 나라의 경우 현재 8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는 사회사업실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아내학대와 관련된 전문적 지원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경험적 연구를 통해 이러한 잘못된 믿음들의 실태를 밝힌 연구는 드문데 유일하게 Ewing와 Aubrey(1987)의 연구를 통해 이러한 잘못된 믿음(Myth)들이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진실인 것으로 여겨지며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일선 경찰이나 아내학대 사건을 접하는 법조인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Ewing와 Aubrey(1987)는 법정에서의 배심원들의 역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 법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성인남녀 216명을 대상으로 실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Myth)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그들이 제시한 위의 8개의 잘못된 믿음(Myth) 항목 중에서 7개 항목에 대해 응답자들이 강한 동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내학대에 대한 잘못된 믿음(Myth)의 심각성을 증명해 주었으며, 이와 더불어 법적 심리과정에서 배심원을 대상으로 잘못된 믿음(Myth)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Walker(1979, 1984)가 정리한 진술과 Ewing와 Aubrey(1987)의 연구에서 사용된 진술들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20개의 잘못된 믿음(Myth)을 선별하여 사용하게 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아내학대 관련기관 종사자<sup>3)</sup>와 비교집단인 일반인으로 구분된다.

경찰은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의 협조로 대구 시내 5개구에 소재한 경찰서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 100명과 경북도내 17개 지역의 경찰 100명, 총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총 194부가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의료인의 경우는 대구시의 2개 대학병원 5개의 중소규모 병원과 경북의 5개 병원의 응급과, 외과, 정신과, 산부인과에 근무하는 의사(120명)와 간호사(60명)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이중 164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법조인은 경남, 대구,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검사와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모집단의 크기가 다른 집단에 비해 작은데 따른 표집상의 어려움과 검사의 근무지 이동이 빈번함을 감안한 것으로 대구 28부, 서울 27부, 경남에서 26부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비교집단인 일반인의 경우는 성인 남녀 각 150명을 연령, 직업, 결혼여부, 거주지역을 고려하여 유의 표집을 하였으며, 최종 자료수집 후 아내학대 관련 기관종사자들과의 비교를 위해 연령과 결혼여부 변인에 근거하여 일부를 제외한 22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2.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전체 연구과정 및 설문지의 타당성을 살피기 위해 대구시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를 50명을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하여 설문지의 신뢰도를 검토하고 이에 따라 문항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예비연구(pilot study)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먼저 아내학대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자료수집을 위해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을 방문하여 설문지를 의뢰하고 경찰청의 문서발송경로를 통해 설문지를 배부, 회수하였다. 그리고 의료인, 법조인과 일반인은 기관이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나누어주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해 응답하는 방법을 병행하였다.

#### 3. 측정도구

##### 1) 아내학대에 대한 잘못된 믿음(Myth)

Ewing와 Aubrey(1987)는 아내학대에 대한 잘못

3) 아내학대 관련기관인 여성의 전화나 복지관, 상담소, 연구소 등의 관련기관에 종사자들은 경찰, 법조인, 의사들에 비해 아내학대에 대한 잘못된 믿음(Myth)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증거(Mckeel과 Sporkowski, 1993)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된 믿음(Myth)의 측정을 위해 아내학대 사건을 묘사한 가상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8개의 잘못된 믿음(Myth)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가상적인 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한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1998)에서 사용한 사례 예문과 8가지의 잘못된 믿음(Myth) 측정항목을 활용하고, 또한 Walker(1979)가 제시한 21개의 아내학대에 대한 잘못된 믿음(Myth) 항목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된 18가지 잘못된 믿음(Myth) 항목을 채택하였다. 그런데 Walker와 Ewing 등의 잘못된 믿음 문항 중에서 6개 항목이 개념적으로 중복되어 최종 20개의 측정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예', '아니오'로 응답하게 되며, '예'에 대한 응답에 1점을 부여하여 점수의 범위는 0-20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재검사법(test-retest method)을 실시한 결과 .87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타 변인

그 외 성별, 연령, 직업, 결혼여부, 근무지나 거주지 등에 대한 단일 항목이 제시되었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SPSS PC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설문지의 신뢰도는 재검사법(test-retest method)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아내학대 관련기관 종사자들과 일반성인의 아내학대에 대한 잘못된 믿음(Myth) 및 그들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여부, 직업변인의 일반적인 특성과 잘못된 믿음문항별 응답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그리고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여부에 따라 나타나는 4집단의 잘못된 믿음의 차이는 t-test와 일원변량분석을 하고 이에 대한 사후검증은 scheffe's grouping 방법을 적용하였고, 잘못된 믿음 문항별로 4집단의 동의빈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

해 교차분석을 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문제 1의 결과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들의 아내학대에 대한 잘못된 믿음 점수는 경찰의 경우 평균 6.88(SD 3.24), 법조인은 6.09(SD 2.68), 의료인은 6.98(SD 2.91)로 나타나 20개의 잘못된 믿음 중 6개 내지 7개 정도에 대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 두개의 잘못된 믿음을 가짐으로써 아내학대에 대해 왜곡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아내학대에 대한 잘못된 믿음(Myth)의 태도를 상당히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반인의 경우는 잘못된 믿음 점수가 평균 7.14(SD 3.28)로써 20개의 믿음 중 7개 정도에 대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다른 집단보다 0.26정도 높긴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선에서 아내학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경찰 및 법조인들과 피해 여성들에게 신체, 심리적인 지지를 보내고 적극적으로 신고의무를 수행해야 할 의료인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아내학대 관련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아내학대 관련기관 종사자와 일반인의 아내학대에 대한 잘못된 믿음

잘못된 믿음(Myth) 집단 유형	빈도 (명)	평균 (M)	표준편차 (SD)	범위 (Range)
경찰	194	6.88	3.24	0-20
법조인	81	6.09	2.68	1-12
의료인	164	6.98	2.91	0-19
일반인	222	7.14	3.28	1-19
F	2.31(ns)			

## 2. 연구문제 2의 결과

연구문제 2에 대한 결과는 <표 2>와 같이 요약된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성경찰인 경우 잘못된 믿음 점수는 평균 7.57이고 여성경찰은 4.89로 나타나 평균 2.68의 차이를 보여 남성경찰이 여성에 비해 잘못된 믿음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의 경우는 남성은 7.90, 여성은 6.18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지만 경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인의 경우는 남성(7.31)이 여성(6.92)에 비해 아내학대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다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미미하며 또한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은 물론 여성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Ewing와 Aubery(1987)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20대 이하(4.87)의 연령에 속하는 경찰들이 30대(7.22), 40대 이상(6.88)의 경찰에 비해 잘못된 믿음을 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또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그리고 법조인의 경우는 20대 5.40개, 40대 이상 4.64개에 비해 30대가 7.08개로 2-3개의 잘못된 믿음을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으며, 이것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인 사이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특히 20대 이하(6.28)와 30대(7.01), 40대 이상(8.80)의 집단간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다. 이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Ewing와 Aubery(1987)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잘못된 믿음 점수가 높았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의료인의 경우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교육수준의 경우 경찰과 일반인 모두 고졸 이하 집단이 대졸 이상 집단 보다는 잘못된 믿음을 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관련변인에 따른 아내학대관련기관종사자와 일반인의 잘못된 믿음

독립변인(범주/N)		종속변인		
		잘못된 믿음		
		평균(mean) Scheffe, s G		
경찰	성별	남성	144	7.57
		여성	50	4.89
	F		0.93(n.s.)	
	연령	20대 이하	55	4.87 A
30대		90	7.22 B	
40대 이상		49	6.88 B	
F		20.54***		
교육수준	고졸 이하	57	8.12	
	대졸 이상	137	6.36	
F		0.02(n.s.)		
결혼여부	미혼	40	5.78	
	기혼	154	7.16	
F		2.93(n.s.)		
의료인	성별	남성	75	7.9
		여성	89	6.18
	F		4.12(n.s.)	
	연령	20대	53	7.06
30대		70	6.80	
40대 이상		41	7.19	
F		24(n.s.)		
결혼여부	미혼	64	7.02	
	기혼	100	6.95	
F		25(n.s.)		
법조인	연령	20대 이하	5	5.40
		30대	48	7.08
		40대 이상	28	4.64
	F		9.27***	
결혼여부	미혼	5	7.20	
	기혼	76	6.07	
F		3.55(n.s.)		
일반인	성별	남성	134	7.31
		여성	90	6.92
	F		0.44(n.s.)	
	연령	20대 이하	61	6.28 A
30대		122	7.01 B	
40대 이상		41	8.80 B	
F		7.93***		
교육수준	고졸 이하	41	8.57	
	대졸 이상	182	6.77	
F		0.89(n.s.)		
결혼여부	미혼	62	6.07	
	기혼	162	7.57	
F		0.92(n.s.)		

\*\*\*  $p < .001$  n.s.=not significant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나타난 문자가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  
의료인과 법조인은 모두 대졸 이상이므로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없었고, 법조인은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없었음



마지막으로 결혼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면, 경찰과 일반인은 기혼자들이 미혼자들 보다 잘못된 믿음을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인의 경우는 미혼자가 7.02개, 기혼자가 6.95개 나타나 그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법조인의 경우는 기혼자 6.07개에 비해 미혼자가 7.02개로 나타났으나 미혼자의 수가 5명이어서 그 결과의 일반화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통계적 유의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아내학대에 대한 잘못된 믿음은 경찰과 법조인, 일반인들 사이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고 그 외 성별, 교육수준, 그리고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연구문제 3의 결과

〈표 3〉은 아내학대 관련기관 종사자와 일반성인의 잘못된 믿음의 유형별 동의정도를 나타내는데 유의도는 각 항목에 동의하는 빈도의 차이에 대한 교차분석결과를 의미한다.

아내학대 관련기관 종사자들과 일반인들의 40% 이상이 공통적으로 동의한 잘못된 믿음은, 남편의 폭력이 있을 때 아내가 마음만 먹으면 집을 떠나기가 쉽다는 믿음(4번)과 한 두 번의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면 남편의 폭력이 없어질 것이라는 믿음(7번), 직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줄면 남편의 폭력이 없어질 거라는 믿음(13번),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는 이혼해서는 안된다는 믿음(20번)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폭력이 다른 심각한 부부문제 때문에 발생한다는 믿음(1번), 남편의 구타가 반복가능성이 없는 것이라는 믿음(2번), 매맞는 여성이 많지 않다는 믿음(9번), 음주가 폭력의 원인이라는 믿음(14번), 결혼 전의 폭력은 결혼 후에 없어진다는 믿음(19번)에 대한 동의율은 집단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번과 2번, 9번, 20번 믿음에 대해서는 법조인들의 동의율이 낮게 나타나 경찰과 의료인, 그리고 일반인들에 비해 이러한 잘못된 믿음은 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음주를 학대의 원인으로 보는 14번 믿음에 대해 경찰이 다

른 집단에 비해 다소 낮은 동의율을 보이지만 이들 또한 동의율이 39.7%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법조인들 중 69.5%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결혼 전의 폭력은 결혼 후에 없어진다는 믿음(19번)은 경찰과 일반인들이 의료인과 법조인에 비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및 제언

아내학대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아내학대에 대한 잘못된 믿음의 실태를 일반 성인남녀와 비교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아내학대 관련기관 종사자들과 일반인들은 아내학대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6-7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 두 개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아내학대 사건을 잘못 인식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게 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특히 아내학대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 및 법조인과 신고의무가 있는 의료인의 잘못된 믿음 정도는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내학대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행정적, 법적 처리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아내학대의 발생률을 낮추는데 기여해야 할 경찰과 법조인은 물론 학대를 당해 병원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들의 사례를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심리, 신체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할 의료인에게 보다 전문화된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남녀의 성별비교를 통해 남성은 물론 여성 또한 이러한 잘못된 믿음(Myth)에서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 Ewing와 Aubrey(1987)의 연구 결과가 본 연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즉 아내학대의 피해자가 같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여성이나 아내학대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잘못된 믿음(Myth)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성별에 상관없이 이들에 대한 인식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3〉 아내학대 관련기관 종사자들과 일반인의 잘못된 믿음유형별 동의정도

잘못된 믿음(Myth)	동의빈도(%)			
	경찰	의료인	법조인	일반인
1. 경민과 현주 부부는 다른 심각한 부부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78(40.2)**	80(48.8)**	15(18.3)**	94(42.0)**
2. 현주에 대한 경민의 구타는 반복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49(25.3)	35(21.3)	22(26.8)	70(31.3)
3. 현주도 경민의 행동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127(65.5)	92(23.7)	50(61.0)	120(53.6)
4. 만약 앞으로도 경민이 폭력을 사용할 경우에 현주는 마음만 먹는다면 집을 쉽게 떠날 수 있을 것이다	97(50.0)	84(51.2)	45(54.9)	116(51.8)
5. 경민이 폭력을 계속 사용하는데도 현주가 집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녀에게 어느 정도 피학증(맞는 것을 즐기는성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3(11.9)*	22(13.4)*	2(2.4)*	32(14.3)*
6. 경민이 폭력을 계속 사용하는데도 현주가 집을 떠나지 않는다면 현주쪽에 정서적인, 또는 성격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4(17.5)**	54(32.9)**	2(2.4)**	63(27.7)**
7. 한 두번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다면 경민의 폭력은 없어질 것이다	89(45.9)*	66(40.2)*	37(45.1)*	126(56.3)*
8. 경찰이나 법에 호소함으로써 현주는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되고 남편의 폭력도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55(28.4)	43(26.2)	14(17.1)	56(25.0)
9. 현주처럼 남편한테 맞는 여성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91(46.9)*	50(30.5)*	32(39.0)*	108(48.2)*
10. 현주처럼 맞는 여성들은 대부분 경제수준이 낮거나 사회적으로 하층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61(31.4)	57(29.5)	27(32.9)	53(23.7)
11. 경민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면 현주를 때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39(20.2)**	36(22.0)**	4(4.8)**	49(21.9)**
12. 경민은 평소 주변 친구나 친척,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다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을 것이다	51(26.3)	55(33.5)	15(18.3)	62(27.7)
13. 경민이 현주를 때린 것은 해고로 인한 심리적 위축감 때문이므로 취업이 된다면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113(58.2)	133(59.4)	36(43.9)	134(59.8)
14. 사건이 일어난 그 날 아마도 경민은 현주를 기다리며 술을 마셨기 때문에 아내를 때리게 되었을 것이다	77(39.7)**	72(43.9)**	57(69.5)**	107(47.8)**
15. 경민은 원래 심리적으로나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7(24.2)	54(32.9)	17(20.7)	61(27.2)
16. 학대를 당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교육수준이 낮고 전문기술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29(14.9)	49(21.9)	17(20.7)	48(21.4)
17. 경민은 현주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10(5.2)**	39(23.8)**	5(6.1)**	11(4.9)**
18. 만일 경민의 구타가 심해져 두 사람이 이혼하고 현주가 재혼을 한다 하더라도 현주가 새 남편으로부터도 구타당할 가능성이 있다	58(29.9)	52(31.7)	24(29.3)	63(28.1)
19. 경민과는 달리 결혼 전에 결혼할 상대방에게 빵을 때리거나 주먹을 쓰던 사람도 결혼을 하여 사랑에 대한 확신을 얻어 안정감을 찾게 되면 배우자를 때리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87(44.8)*	59(36.0)*	23(28.0)*	98(43.8)*
20. 아들과 딸을 생각해서라도 현주는 경민과 이혼해서는 안된다	126(64.9)**	77(47.0)**	57(69.5)**	126(56.5)**

\*\* p<.001 \* p<.05 (유의도는 4집단의 각 문항별 동의빈도에 대한 검증결과를 의미함)

넷째, 경찰과 일반인은 30, 40대 연령에 속하는 사람들이 20대 이하인 사람들에 비해 아내학대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이것이 코오트(동시대출생) 효과인지 아니면 연령변화에 따른 자연스런 의식의 변화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향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달리 범조인의 경우 다른 연령 층에 비해 40대 이상인 경우 잘못된 믿음을 가장 적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경찰은 사건을 처리하여 조사하는 기간이 재판과정에 비해 비교적 짧고 신고가 되어도 구속되는 사례가 적음으로 해서 아내학대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대 비해, 범조인들은 일단 법원으로 넘어온 사건을 다루는 만큼 재판의 심리과정에서 아내학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황을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만큼 비교적 경험이 많은 40대 이상의 범조인들이 잘못된 믿음을 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또한 범조인들이 경찰이나 의료인, 일반인에 비해 전체적으로 1개 정도의 잘못된 믿음을 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몇가지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이 대부분 대구와 경북권에서 표집되었기 때문에 이상의 결과와 결론을 다른 지역에 일반화하는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뚜렷한 지역적인 특성과는 별도로 가부장적이고 유교문화적 속성이 아직도 대부분의 지역에 잔존해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이상의 결과를 다음과 같은 용도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거시적으로 아내학대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아내학대에 대한 잘못된 믿음(Myth)과 관련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적 차원의 전문화된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있어 경험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본 연구결과 아내학대 관련기관 종사자와 일반인들이 많은 동의율을 보이는, 즉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잘못된 믿음(Myth) 내용들을 근거로 이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내용을 구성하는데 경험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경북여성정책개발원(2000). 가정폭력위기개입을 위한

workshop자료집.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대법원(2000). 가정보호사건 통계자료. www.scourt.go.kr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1998). 가정폭력예방길잡이-가정폭력특례법.  
 여성신문(2002). 경찰 재교육 없는 가정폭력방지는 꿈, 제670호, 2002. 3. 30-4. 5.  
 이동원, 김지선(1998). 가정폭력의 허상과 실상, 부록: 관련법률의 구성과 해설. 서울: 길안사.  
 조선일보. 1998년 7월 14일자. 가정폭력 피해주부, 남편 퇴거명령 신청.  
 조선일보. 1999년 5월 30일자. 가정폭력 3명 중 2명 법원처분없이 가정복귀.  
 조선일보. 1999년 1월 17일자. 폭력남편에 두달간 안방출입 금지명령.  
 조선일보. 2000년 6월 2일자. 소송폭주 “법대로 해보자”.  
 한국여성개발원(1993).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Acker, J. R. & Toch, H. (1985). Battered woman, straw man, and expert testimony: A comment on State v. Kelly. *Criminal Law Bull*, 21, 125-155.  
 Barrera, M., Palmer, S., Brown, R., & Kalaher, S. (1994). Characteristics of Court-Involved men and non-court-involved men who abuse their wiv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9(4), 333-345.  
 Berk, S. & Loseke, D. C. (1980). “Handling” Family Violence: The situate determinants of police arrest in domestic disturbance. *Law and Society Review*, 15, 317-346.  
 Ewing, C. P. (1987). Battered women who kill: Psychological self defense as legal justification. Lexington; Lexington Books.  
 Ewing, C. P. & Aubrey, M. (1987). Battered woman and public opinion: Some realities about the myths. *Journal of Family Violence*, 2(3), 257-264.  
 Gelles, R. J. & Cornell, C. P. (1985). Intimate violence in families. California: SAGE Publishing Ltd.

- Gelles, R. J., & Straus, M. A. (1979). Determinants of violence in the family: Toward a theoretical integration. In W. Burr, R. Hill, F. I. Nye, & I. Russ(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Vol 1)*. New York, NY; The Free Press.
- Koski, P. R. & Mongold. W. D. (1988). Gender effects in attitudes about family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3(3), 225-237.
- Martin, D. (1981). *Battered wives*. Sanfracisco, CA; Volcano Press.
- Martin D. 저, 정세웅 역 (1992). *매맞는 여자들*. 서울; 한국문연.
- Rosenbaum, A. & O'Leary, K. D. (1981). Marital violence: Characteristics of abusive cou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9, 63-71.
- Roy, M. (1977). *Battered Woman; A psychological study of domestic violence*. N.Y.; Litton Educational Publishing Inc.
- Walker, L. (1979). *The battered women*. Harper and Row: New York.
- Walker, L. (1984). *The battered women syndrome*, Springer: New York.
- Walker, L. 저, 황애경 역 (1997). *그 사랑은 자유가 아니었다*. 서울: 열린.
- Weiss, A. N. Tolman, R. M., & Bennett. I. (1998). An ecological study of nonresidential service for battered woman within a comprehensive community protocol for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3(4), 395-415.
- Woffordt, S., Mihalic, D. E., & Menard, S. (1994). Continuities in Marital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9(3), 196-225.

(2002년 4월 30일 접수, 2002년 11월 7일 채택)